



의안번호	제92호
회의 연월일	2025. 8. 18. (제570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제출연월일	2025. 8. 4.

범죄예방운영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을 삭제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645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경비업 허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경비업무 외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제2호다목부터 너목까지를 라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2	경고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	----------------	----	-------------	------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호송경비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신변보호업무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기계경비업무	·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관제시설	· 감지장치·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특수경비업무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6.혼잡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

비고

1.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4.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업무 외 종사업무(제7조의4 관련)

구분	업무
공통	▶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시설경비업무	▶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의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신변보호업무	▶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비고

시설경비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4(경비업무 외 종사업무)</u> <u>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무</u> <u>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u> <u>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업무”란 별표 1의3과 같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31